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보호, 취득, 관리 및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, 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
-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,0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2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,
- 그리고,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- 이에 대한 현행 조례의 기준일(2003. 12. 31)이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(2012. 12. 31)과 일치하지 않고, 이로 인해 사용자로 하여금 과도한 사용부담을 주고 있어 오히려 민생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료되는바,
- 현행 조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일 2003. 12. 31을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서 규정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